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장

제 76 호 2015. 8. 5(수)

고 시

- 남원시 고시 제2015- 48호 지적제조사사업 대행 고시 1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 2015 - 960호 남원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 남원시 공고 제 2015 - 960호 남원시 재향경우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7
- 남원시 공고 제 2015 - 960호 남원시 시민애향운동 및 범시민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2

회 람										
----------------	--	--	--	--	--	--	--	--	--	--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2

남원시 고시 제2015- 48호

지적재조사사업 대행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남원시 내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
대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08. 05.

남 원 시 장

1. 지적측량수행자 명칭 :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원지사
2. 사업지구의 명칭 : 내척지구
3. 사업위치 및 면적
 - 남원시 내척동 198-33번지 일원 795필지 564천㎡
4. 대행 업무 : 지적재조사 측량 및 일필지 조사
 - 일필지조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지적재조사측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남원시 공고 제 2015 - 960호

남원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5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개정 지방재정법을 반영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조례로 제정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25일 까지 붙임 의견제출서를 남원시장(참조 : 총무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총무과 (우편번호 590-701)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팩스(620-6704), 직접방문, 인터넷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총무과 담당자 황인욱(전화 620-606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5. 8.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과 장

1. 제안이유

2016년 예산편성 분부터 적용되는 개정 「지방재정법」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와는 별개조직으로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에 대한 지원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향후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원지구협의회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을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원지구협의회로 정의하여 지원대상을 분명히 함(안 제2조)
- 나.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조직이 수행하는 사업 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열거하여 지원범위를 분명히 함(안 제3조)
- 다.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절차 및 표창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 및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8. 5. ~ 2015. 8. 25. (20일간)
 - 결 과:
- 다.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전라북도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십자 설립 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원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원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 시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 활동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 활동 사업
4. 안전교육 활동 사업
5. 평생교육 활동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4조(표창) 시장은 봉사회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천에 기여한 적십자사 회원에 대하여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지급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과급 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공고 제 2015 - 960호

남원시 재향경우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5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재향경우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개정 지방재정법을 반영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조례로 제정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25일 까지 불임 의견제출서를 남원시장(참조 : 총무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총무과 (우편번호 590-701)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팩스(620-6704), 직접방문, 인터넷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총무과 담당자 황인욱(전화 620-606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재향경우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5. 8.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과 장

1. 제안이유

재향경우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재향경우 및 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원대상 및 범위를 분명히 함으로써 재향경우 및 그 단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재향경우회”의 정의규정을 마련하여 보조지원대상을 분명히 함(안 제2조)
- 나. 재향경우회의 지원대상사업을 열거함으로써 보조사업지원범위를 분명히 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지방재정법」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8. 5. ~ 2015. 8. 25.(20일간)
 - 결 과:
- 다.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전라북도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재향경우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경우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안보의식과 질서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재향경우회”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에 따라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산하 “남원시재향경우회”(이하 “재향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남원시장은 재향경우회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시민 안보의식과 질서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 2.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 3. 호국영령 추모 관련 사업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재향경우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 2015 - 960호

남원시 시민애향운동 및 범시민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5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시민애향운동 및 범시민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개정 지방재정법을 반영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조례로 제정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25일 까지 붙임 의견제출서를 남원시장(참조 : 총무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총무과 (우편번호 590-701)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팩스(620-6704), 직접방문, 인터넷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총무과 담당자 황인욱(전화 620-606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시민애향운동 및 범시민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5. 8. .
 제출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1. 제안이유

남원시민의 애향의식 고취 및 지역현안 해결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소통, 지역 숙원문제, 이해상충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애향사업 및 범시민운동의 시민자율적 실천운동에 대하여 남원시의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민자율적인 실천운동의 대상 사업을 규정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분명히 함(안 제3조)
- 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계획제출의 시간적 예외규정을 두어 지원 대상과 관련된 시민운동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 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8. 5. ~ 2015. 8. 25. (20일간)
 - 결 과:
- 다.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시민애향운동 및 범시민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지역현안 해결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애향의식 고취, 시민소통 추진, 숙원사업 추진, 이해상충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자율적인 실천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애향운동”이란 남원출신 또는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애향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활동이나 청소년 학업 증진 또는 지역 인재의 육성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범시민운동”이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 가. “시민소통활동”이란 시민, 지역, 직능 단체 간의 의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나. “시민숙원사업추진활동”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전체의 숙원사업을 외부기관이나 단체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활동
 - 다. “시민이해상충해소활동”이란 시민 간 또는 시와 타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가 상충되어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
 - 라. 그 밖에 시 전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범시민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시장은 시민애향운동 및 범시민운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법정단체 (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법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의 수혜자가 시민 전체에 걸친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 할 것
3.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구성·운영되지 아니 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21명 이상일 것

③ 시장은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유관기관 및 각급 학교 등과 협력하여 행정상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의 제출 등) ①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법인 등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드는 경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시책의 변화 등 갑작스러운 대외 환경 변화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후에도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시민애향운동 및 범시민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